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4. 12. 24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12. 8
- 다. 회부일자 : 94. 12. 8
- 라. 상정일자 : 94. 12. 23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가. 제안사유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적용범위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완충 및 경관녹지의 점용허가(안 제2조)
- 점용허가(안 제4조)
 -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제한
 - 교통소통 및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 허가설치
 -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
- 점용허가기간 : 2 ~ 3년(안 제5조)
- 녹지점용료납부 : 연액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 ~ 50/1000(안 제7조)
- 점용허가취소(안 제10조)
 - 조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녹지설치 및 유지 목적에 위배되거나 풍치를 해하는 경우
 -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 5,000원(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허 면)

가. 검토과정

- 제출연월일 : 94년12월8일
- 제출자 : 달서구청장(도시개발과소관)
- 검토기간 : 94년12월16일~12월19일

나. 관련근거법령

-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의 완충 및 경관녹지에 한하여 도로등 관련시설의 설치에 따른 녹지점용의 허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제정조례로 전문 16조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등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은 없으며 동법령에 미비한 사항등 일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각됨.
- 녹지구역내 점용허가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허가과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됨.

4. 질의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1부.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 (안)

의안 번호	94-49
----------	-------

제출년월일 : 94. 12. .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도시개발과)

1. 제안사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3. 주요골자

- 적용범위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완충 및 경관녹지의 점용허가(안 제2조)
- 점용허가(안 제4조)
 -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제한
 - 교통소통 및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 허가설치
 -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
- 점용허가기간 : 2~3년(안 제5조)
- 녹지점용료납부 : 연액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50/1000(안 제7조)
- 점용허가취소(안 제10조)
 - 조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녹지설치 및 유지목적에 위배되거나 풍치를 해하는 경우
 -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 5,000원(안 제1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완충 및 경관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녹지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3. "관리용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녹지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 ①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

여야 하며 이면 도로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 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녹지의 점용 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별로 관계법에 따라 정하며 허가받은 자가 기간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녹지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납부등) ①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녹지점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녹지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점용료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인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점용료 징수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10조(점용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공작물의 이전,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녹지설치 및 유지목적에 위배되거나 풍치를 해하는 경우
4.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녹지원상복구)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의 만료등으로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대등의 제한)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되는 제반 권리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수수료) ① 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 지 점 용 료

점 용 대 상	기 준	점 용 요 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연 액 당	당해재산가액의 25/1000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	"
3. 도로, 교량, 궤도, 노외주차장	"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	"	"
5. 방화용 저주조 지하대피시설	"	"
6.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이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	"	"
7.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	당해재산가액의 50/1000
8.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	당해재산가액의 25/1000
9.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	당해재산가액의 50/1000
10.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	"	당해재산가액의 25/1000

[별표 2]

수 수 료

구 분	금 액	비 고
점용허가신청	5,000원	수수료는 대구직할시달서구 수 입 증 지 로 납 부